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 인천광역시의회교육위원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수신자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의사담당관)  
(경유)

제 목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보고

1. 강병수 의원 외 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보고합니다.

| 제 명                                 | 발의자        | 입법예고기간                   | 비 고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br>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 강병수 의원외 8명 | 2012.6.9 ~<br>6.18(10일간) |     |

2. 아울러,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보게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인천광역시의회교육위원장

★지방교육  
행정주사

심의관

전문위원

위원장

협조자

시행 교육위원회 - ( 2012. 6. 8.) 접수 ( )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http://www.incheon.go.kr>

전화 032)440-6262 /전송 032)440-8784 / tico37@korea.kr / 공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06 08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와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부서, 사용부서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과 일부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전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복무, 업무수행, 개인 능력 개발 등을 위해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 아.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정함(부칙)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6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tico3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 출 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 고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2조와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채용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기간제교원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는 자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7조(전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동일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용부서의 정원이 감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div data-bbox="411 322 683 365"> <p>■ 근로기준법</p> </div> <div data-bbox="440 383 624 423"> <p>제2조(정의)</p> </div> <div data-bbox="411 495 703 537"> <p>■ 유아교육법</p> </div> <div data-bbox="440 555 624 598"> <p>제2조(정의)</p> </div> <div data-bbox="440 613 780 654"> <p>제7조(유치원의 구분)</p> </div> <div data-bbox="440 669 692 710"> <p>제23조(강사 등)</p> </div> <div data-bbox="411 781 772 824"> <p>■ 초·중등교육법</p> </div> <div data-bbox="440 842 745 882"> <p>제2조(학교의 종류)</p> </div> <div data-bbox="440 898 954 938"> <p>제3조(국·공·사립학교의 구분)</p> </div> <div data-bbox="440 954 831 994"> <p>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p> </div> <div data-bbox="411 1066 1358 1108"> <p>■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 </div> <div data-bbox="440 1126 624 1167"> <p>제2조(정의)</p> </div> <div data-bbox="411 1238 730 1281"> <p>■ 교육공무원법</p> </div> <div data-bbox="440 1299 624 1341"> <p>제2조(정의)</p> </div> <div data-bbox="440 1357 745 1397"> <p>제32조(기간제교원)</p> </div> <div data-bbox="411 1469 1390 1512"> <p>■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p> </div> <div data-bbox="440 1529 1236 1572"> <p>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a href="#">[시행일 : 2013.1.1]</a></p> </div> <div data-bbox="703 1644 1091 1686"> <p>“세부내용 별지 작성”</p> </div>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 당 없 음”                                                                                                                                                                                                                                                                                                                                                                                                                                                                                                                                                                                                                                                                                                                                                                                                                                                                                                                                                                                                                                                                                                                                                                                          |
| 관련자료         | “해 당 없 음”                                                                                                                                                                                                                                                                                                                                                                                                                                                                                                                                                                                                                                                                                                                                                                                                                                                                                                                                                                                                                                                                                                                                                                                          |

# 관계법령 발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③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13.1.1]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원관리(제4조 정수 책정 및 관리), 인사(제6조 채용, 제7조 전보), 단체교섭, 예산확보, 인력관리(제5조 관리계획 수립, 제8조 교육훈련 등)를 위해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이 필요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52개 직종의 신규채용과 8,777명의 인사관리, 교육훈련, 정원관리, 처우개선, 급여작업 등에 추가 인력이 필요함

#### 나. 추계의 결과

인사관리, 교육훈련 : 19명(2개팀 추가 신설)

정원관리, 처우개선 등 : 4명(기존 2명에 4명 추가로 1개팀 신설)

급여 등 : 2명(기존팀에 2명 추가)

추가인력 : 총 25명

추가소요액 : 1차년도 1,281백만원, 5년간 총 6,773백만원

※ 현재 지방공무원 3,073명의 신규채용, 인사관리 등을 위해 조직인력 1개팀 7명, 조직·정원관리 등을 위해 조직인력 1개팀 2명, 급여 지급 등 1명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및 교부금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4. 작성자 :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강 병 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 전담부서 신설 비용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br>(2013년) | 2차년도<br>(2014년) | 3차년도<br>(2015년) | 4차년도<br>(2016년) | 5차년도<br>(2017년) | 계         |
|-----------|-----------------|-----------------|-----------------|-----------------|-----------------|-----------|
| 인건비       | 1,136,231       | 1,193,043       | 1,252,695       | 1,315,330       | 1,381,096       | 6,278,395 |
| 자산취득비     | 75,412          | 0               | 0               | 0               | 33,600          | 109,012   |
| 기본경비(운영비) | 69,852          | 73,345          | 77,012          | 80,862          | 84,906          | 385,977   |
| 합계        | 1,281,495       | 1,266,388       | 1,329,707       | 1,396,192       | 1,499,602       | 6,773,384 |

※ 인건비는 각종 수당(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제외함

# 실·국(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등 심의<br>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br>4.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5.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6.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7. 기타 문제점 |      |      |
| 실·국(지역)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실·국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